

# 고대 한일간 王室婚과 文化交流

-百濟와 倭를 중심으로-

윤수희(서울여자대학교 강사)

## <목차>

1. 머리말
2. 백제와 왜의 王族外交
3. 백제 왕녀의 渡倭와 혼인
4. 백제와 왜의 왕실혼과 정국변화
5. 맺음말

## 1. 머리말

오늘날, 한국에게 일본은 一衣帶水이면서도 萬水千山만큼 먼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古代의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다. 특히 倭國과 가장 친밀한 소통을 보여준 곳은 百濟였다. 백제는 佛敎와 儒敎를 위시한 精神文化 뿐 아니라, 기와와 토기·직물 등의 生産技術 그리고 이 모든 문화를 직접 몸에 지닌 승려와 五經博士·畫工·瓦工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왜에 파견하였다.

백제는 최상층 신분인 王族들도 왜에 파견하였는데, 이 중에는 왕위계승권자인 太子뿐 아니라 王弟(왕의 남동생)와 王妹(왕의 여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일본학계와 한국학계에서는 이러한 백제의 왕족파견 관행을 '王族外交' 또는 '質體制'로 이해하였는데 이것은 남성들의 활동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이다. 백제와 왜의 문화교류에는 여성인 百濟 王女의 역할도 있었으나 그러한 점은 간과되고 남성들만의 시스템으로 이해되고 있다.

백제와 왜국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넘나들었다고 하면 그중 일부는 서로간에 혼인을 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양국간의 혼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더욱이 왕녀들의 교류 및 혼인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日鮮同祖論의 영향도 일정부분 있었을 것으로 본다. 日鮮同祖論은 식민통치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던 저명한 이론이다. 한·일간에 혼인관계와 혈연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자칫 이미 사라져버린 지나간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양국간 혼인에 대한 연구는 日鮮同祖論과 유사한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문적 접근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특히 □□日本書紀□□에 采女로 기록된 백제왕녀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역사경험 속에 내재된 선입견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중세이래의 貢女경험과 위안부문제, 우리의 가부장적 질서가 여성관에 자연스럽게 투영되어, 우리나라의 여성이 다른 나라로 보내어져서 혼인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만들었다. 더구나 왜왕에게 바쳐지는 采女라는 신분으로 인해, 이것이

백제와 왜의 上下·服屬關係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로 인식된 탓에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대의 중국 특히 漢~唐代 왕녀들의 사례는 백제 왕녀의 활동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일간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견인차적인 역할을 한 존재로서 百濟 王女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국가간 혼인<sup>1)</sup>과 혼인을 통한 인적교류<sup>2)</sup>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백제 대외관계의 특징인 왕족외교에 대해 살펴보고, 5~6세기 백제왕실에서 왜에 파견한 왕족들의 신분과 성격을 짚어본다. 아울러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 왕족의 파견에 대해 새로이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日本書紀□□의 도왜기사를 통해 백제왕녀들이 왜국으로 건너간 시점과 활동기간을 검토함과 동시에 고대 동아시아에서 散見되는 여성 왕실구성원에 의한 국가간 혼인 사례를 상호 비교하여 고대 왕실혼인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 2. 백제와 왜의 王族外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대한해협은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먼 옛날에도 인류의 왕래를 곤란하게 할 만큼 험든 바다는 아니었다. 한반도 남단과 일본 규슈 사이에는 쓰시마(對馬島)·마쓰우라(松浦)제도·이키(壹岐) 등의 여러 섬들이 마치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었고 이런 지리적 환경이 항해를 용이하게 하였다. 백제와 왜를 오고간 사람들은 이러한 지리적 환경을 잘 활용하였다. 백제와 왜 사이를 오고간 사람들의 계층을 보면, 가장 상류층인 왕실과 관인층 외에도 생산기술자, 지식예술인, 기층민 등 아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자의와 무관하게 나라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교류에 투신한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人的交流에 대해서는 쉘크로드학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쉘크로드학은 일찍부터 동서양의 학계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집중한 분야로서 교류사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쉘크로드학에서 보는 국가간 인적교류의 상황은 크게 3단계를 거쳐 발전해나간다. 이에 따르면,<sup>3)</sup> 제 1단계는 교류관계 수립을 위한 인적 교류이다. 여기에는 주로 국가나 권력자들간에 호환되는 使節과 和親을 위한 정략적 혼인자와 같은 교류인이 포함된다. 이 기초를 바탕으로 제 2단계인 상인이나 기술자가 내왕하는 물질문명 교류를 위한 인적 교류, 제 3단계인 종교인, 학자, 예술인이 내왕하는 정신문명 교류를 위한 인적 교류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간 혼인을 위한 인적 교류는 가장 초기의 교류에 해당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류관계의 수립단계에 해당한다.

5세기 이전까지 미미하던 백제와 왜의 대외교류<sup>4)</sup>는 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1) 국가간 혼인의 범주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왕실뿐 아니라 양국 일반민(이주민)간의 혼인, 일반민(이주민)과 현지 왕실의 혼인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민(이주민)의 혼인은 자료의 한계로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왕실간의 관계에 비해 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2) 그동안 양국간 혼인을 통한 인적교류에 대해서는 백제계이주민의 경우인 葛城氏와 蘇我氏의 사례에 주목해왔다. (김현구, 2007, 「백제의 木滿致와 蘇我滿智」, □□日本歴史研究□□25, 일본사학회)  
 3) 정수일, 2001, 「인적 교류」, □□셸크로드학□□, 창작과비평사, 400-402쪽  
 4) 백제와 왜의 대외교류에 관한 대표적인 한국측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현구, 1985, □□大和政權의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東京  
 김현구, 1993,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나행주, 1993, 「古代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質의 의미」, □□建大史學□□8, 건대사학회

시기 백제와 왜의 국가간 대외교류는 사실상 왕실이 주도하였다. 왕실은 고대사회에서 외교와 교류의 많은 부분을 직접 담당한 주체이고, 이러한 특징은 백제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서 백제 외교의 주요한 특징으로 王室外交·王族外交<sup>5)</sup>를 드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왕실외교·왕족 외교는 곧 백제외교에서 왕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외교를 담당했던 왕족은 사료 속에 ‘質’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학계는 일찍부터 質의 존재에 주목하여 이를 국가간 服屬의 상징으로 여겨왔으며,<sup>6)</sup> 한국학계에서는 질의 파견과 수용을 기초로 한 관계를 質체제(시스템)<sup>7)</sup>로 이해해 왔다. 5세기 백제와 왜의 외교에서 質의 존재는 국가 간에 이루어진 약속의 증거이자, 왕권 간의 특별한 修好結援에 즈음하여 盟約에 동반한 국제적 의례의 일환이었고 질은 대개 왕의 近親者였다.<sup>8)</sup> 다시 말해 국왕을 대신하여 상대국에게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정치적 담보물인 것이다.<sup>9)</sup>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質은 국가간의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현대적 의미의 人質과는 다른 것으로서 고대의 質은 실상 청병사에 가깝고 외교적 특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sup>10)</sup> 더욱이 백제의 경우 파견된 왕족은 장기체류<sup>11)</sup>를 하면서 왜국 내 친백제파를 형성시키는 역할도 하여, 사실상 質은 백제 왕족외교의 한 단면이었다.

백제가 왜에 보낸 최초의 질은 백제 아신왕대 태자 腆支이다. 전지의 파견과 귀국 기사는 이례적으로 □□三國史記□□와 □□日本書紀□□ 양쪽에 실려 있으며 기사의 기년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전지가 왜에 파견된 397년 백제의 대외 상황은 불안정하였다. 393년 關彌城 전투, 394년 수

이근우, 1994,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이재석, 2001, 「日本書紀 속의 百濟 王曆 小考」, □□日本學□□20,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김현구, 2002, 「백제와 일본간의 왕실외교-5세기를 중심으로-」, □□百濟文化□□31  
 이재석, 2002, 「5세기말의 백제와 왜국」, □□韓國史學報□□12  
 연민수, 2003, □□古代韓日交流史□□, 혜안  
 양기석, 2005, 「5세기 百濟와 倭의 關係」,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김기섭, 2005, 「5세기무렵 백제 渡倭人의 활동과 문화 전파」, □□왜 5왕문제와 한일관계□□  
 연민수, 2005, 「古代日本の 한반도계 氏族과 역할」,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나행주, 2006, 「왜 왕권과 백제·신라의 質-왜국의 질도입·수용의 의미-」, □□日本歷史研究□□24, 일본사학회  
 정효운, 2006, 「百濟와 倭의 문화 교류 양상에 관한 일고찰」, □□日語日文學□□31, 大韓日語日文學會  
 김현구, 2007, 「백제의 木滿致와 蘇我滿智」, □□日本歷史研究□□25, 일본사학회  
 이재석, 2007, 「왜계관료와 그 활동」, □□百濟의 對外交涉□□-百濟文化史大系 研究叢書9-  
 정효운, 2007, 「정신문화의 전파」, □□百濟의 文物交流□□-百濟文化史大系 研究叢書10-  
 정재윤, 2008, 「百濟 王族의 倭 派遣과 그 性格」, □□백제연구□□47  
 5) 연민수, 1997, 「百濟의 對倭外交와 王族」, □□백제연구□□27: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에 채수록  
 6)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東京  
 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東京  
 7) 나행주, 1993, 「古代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質의 의미」, □□建大史學□□8, 건대사학회  
 나행주, 1996, 「古代朝·日關係における 質の意味」, □□史觀□□134  
 나행주, 2006, 「왜 왕권과 백제·신라의 質-왜국의 질도입·수용의 의미-」, □□日本歷史研究□□24, 일본사학회  
 8) 小倉芳彦, 1970, 「中國古代の質」,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다만 이러한 質子로서의 기록이 후대 ‘百濟王’ 姓의 사여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 왜국에 와 있던 백제왕족을 일괄적으로 질자라고 표현하여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을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본 견해(연민수, 2002, 「古代 韓日 外交史」, □□韓國古代史研究□□27, 239쪽)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9) 양기석, 2005, 「5세기 百濟와 倭의 關係」,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58쪽  
 10) 양기석, 1981,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대하여」, □□史學志□□15  
 11) 腆支는 8년, 昆支는 16년, 豊璋은 18년 체제하였으며, 귀국시점을 알 수 없는 斯我和 阿佐 같은 경우는 왜국에 계속 머물다가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谷城 전투, 395년 渭水 전투에서 고구려군과 싸워 많은 사상자를 내며 고구려에 거둬 참패하고 있었다.<sup>12)</sup> 더구나 전지가 왜에 파견되기 직전 해인 396년에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백제 왕도 漢城이 공격받았고 58성 700촌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아신왕의 항복과 함께 왕제 및 대신 10여명 및 生口 1천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참변이 있었다.<sup>13)</sup> 백제로서는 치욕적인 패배였고, 결국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백제는 태자 腆支를 외교적 밀사로 왜국에 파견했다.<sup>14)</sup> 정치적 비중이 높은 차기 왕위계승권자의 파견은 왜측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비중있는 외교라인의 확보라는 실익을 주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왜는 종래 가야를 통한 선진문물의 통로를 다변화할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있었다.<sup>15)</sup> 이러한 양측의 이해가 정확히 부합되는 부분이 바로 양국간 혼인이었다. 전지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청병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倭王室女인 八須夫人<sup>16)</sup>과 혼인을 했다고 한다.<sup>17)</sup>

質子로서 가장 많은 연구가 된 인물은 昆支이다. 곤지는 東城王(479~501)과 武寧王(501~523)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웅진시기 백제왕실의 성격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곤지는 형인 개로왕에 의해 461년 왜국에 質子로 파견되어 477년 귀국할 때까지 16년이란 긴 세월동안 왜국에 체류하였다. 도왜 당시 곤지의 신분은 백제의 現王인 개로왕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左賢王의 작위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 좌현왕이 차기 왕위계승권자이자 가장 중요한 軍權을 장악한 인물의 작호라고 할 때<sup>18)</sup>, 곤지가 백제왕실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왜 이후 곤지는 왜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sup>19)</sup>을 하면서 倭王室女와 혼인을 하였다고 한다.<sup>20)</sup> 곤지가 왜국에서 16년이란 긴 기간을 체류하였고 그 기간중 여러 아이들을 얻었음을 상정해 볼 때 倭女와 혼인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지와 곤지의 사례는 5세기 백제 대외외교에서 왕실이 그 주축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왜에 건너간 백제 왕족은 왜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국가간 외교 관계를 형성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전지와 곤지의 사례이외에도 백제왕실에서 왜에 파견한 인물은 매우 많은데, 그간의 연구에서 왕족<sup>21)</sup>으로 분류된 인물들의 인명과 연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12) □□三國史記□□ 백제본기 阿莘王 2년(393)조, 3년(394)조, 4년(395)조
  - 13) 廣開土王陵碑文 永樂6년(396)
  - 14) 전지가 도왜함으로서 백제와 왜의 교섭관계가 단순교섭에서 군사적 관계로 바뀌었다는 견해가 있다.(김현구, 1993, □□任那日本府研究□□, 일조각, 104쪽)
  - 15) 양기석, 2005, 「5세기 百濟와 倭의 關係」,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57쪽
  - 16) 팔수부인을 解氏로 보고, 이 시기 해씨 가문의 등장을 이기백이 ‘해씨왕비족’ 시대로 본 이래(이기백, 1959, 「百濟王位繼承考」, □□역사학보□□11, 31-35쪽) 이에 찬동한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해씨의 왕비족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명확한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왕비족이란 개념 자체가 부체제적 설명 요소이기 때문에 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된 시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로 본다.(문동석, 2008, □□백제 지배세력 연구□□, 해안, 89쪽)
  - 17) 김기섭, 2005, 「5세기무렵 백제 渡倭人の 활동과 문화 전파」, □□왜 5왕문제와 한일관계□□
  - 18) 坂元義種, 1968, 「五世紀の百濟王とその王・侯」, □□朝鮮史研究會論文集□□4: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東京에 재수록.
  - 19) 姜仁求, 2003, 「公州宋山里古墳と江田船山古墳の比較検討」, □□新世紀の考古學□□  
정재윤, 2008, 「百濟 王族의 倭 派遣과 그 性格」, □□백제연구□□47
  - 20) 김기섭, 2005, 「百濟 東城王의 즉위와 정국변화」, □□韓國上古史學報□□50, 한국상고사학회
  - 21) 宣文·寄麻:덕술·나술(547-548), 三貴·物部烏:간술·나술(554-?), 武子:달술(?-?), 長福:달술(?-643), 의사:달술(645-?)의 경우를 제외함.

【표 1】 백제왕실에서 파견한 왕족과 체류기간<sup>22)</sup>

기간 인물	阿莘王 腆支王 (392-405)(405-420)	蓋鹵王 文周王 (455-475)(475-477)	武寧王 聖王 威德王 (501-523)(523-554)(554-598)	武王 義慈王 (600-641)(641-660)
直支(=腆支王)	397-405			
軍君(=昆支)		461- - 477?		
酒君 <sup>23)</sup>		?-?		
意多郎 <sup>24)</sup>		?-	501	
麻那君			504-505	
斯我君 <sup>25)</sup>			505 <sup>26)</sup> -?	
惠(=惠王)			555-556	
阿佐			597-?	
豊章 <sup>27)</sup>				643--661

【표 1】을 보면 백제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많은 왕족들이 왜에 파견되었으며, 王子나 王弟를 왜에 파견하는 관행은 백제 아신왕대부터 멸망기까지 斷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백제와 왜 사이 우호관계의 실체가 人的 交流와 깊이 관련되었다는 것은 이 표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혼인<sup>28)</sup>을 통한 人的 結合의 사례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표 1】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전지와 곤지 정도만 추론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인적 교류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연구가 미진한 원인으로서는 관련 사료가 부족한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 남성위주의 사고가 은연중에 투영되면서 여성의 활동이 간과된 측면은 없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 3. 백제 왕녀의 渡倭와 혼인

#### 1) 백제 왕녀의 도왜

이 장에서는 백제에서 도왜한 여성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왜한 여성들은 백제 王女

22) 田中史生, 2005, □□倭國と渡來人□□, 吉川弘文館, 東京, 30-31쪽을 참조하여 수정함.  
 23) 骨族을 왕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논자들은 骨族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인해 왕족이 아니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骨族은 왕족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4) 무열기 3년(501) 11월조에 일본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된 백제 意多郎을 백제 왕족으로 보고 461년 곤지 이후 504년 마나군 이전에 파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현구, 2002, 「백제와 일본간의 왕실외교」, □□백제문화□□31, 34쪽)  
 25) 斯我君에 대해서 513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무령왕의 태자인 純陀(淳陀)와 동일인물로 보기도 한다.(연민수, 2002, 「古代 韓日 外交史」, □□韓國古代史研究□□27, 214쪽) 그러나 君과 太子라는 칭호를 보면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이근우, 2002, 「桓武天皇의 母系는 武寧王의 후손인가」, □□한국고대사연구□□26)  
 26) □□日本書紀□□ 무열기 7년조(505)에서 무령왕이 502년에 즉위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踰年칭원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한 □□三國史記□□에 따르면 무령왕은 501년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무열기 7년(505)을 504년으로 보기도 한다.(연민수, 2002, 「古代 韓日 外交史」, □□韓國古代史研究□□27, 214쪽)  
 27) 豊章(豊璋, 豊)을 皇極 원년(642)에 왜국에 파견된 翹岐와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西本昌弘, 1985, 「豊璋と翹岐」, □□ヒストリア□□107, 연민수, 1997, 「百濟의 對倭外交와 王族」, □□백제연구□□27) 한편 풍장과 함께 도왜한 동생 塞上(禪廣)과 숙부 忠勝도 백제왕족의 파견사례로서 같이 언급하기도 한다.  
 28) 혼인은 여성의 활동양상을 살피는데 일차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古代 史料의 80%이상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이자 남성의 계보상의 존재로만 기록되어 있다.(최숙경·하현강, 1972, □□韓國女性史□□, 53쪽) 현실적으로 公的 活動이 극히 제한된 고대의 여성관련 자료에서 회소하게나마 남아있는 경우의 대부분이 혼인과 관련되어 있다.(김선주, 2005, 「신라 사회 여성의 정치 활동」, □□史學研究□□77, 한국사학회, 1쪽)

로 파악되는데, 본래 왕녀라는 것은 좁게는 現王의 딸과 누이만을 의미하나, 넓게는 종실의 딸 들까지 포함한다. 동시대의 중국의 사례를 보면 혼인을 위해 인접국에 보내지는 여성들은 실제 왕녀가 아니더라도 혼인을 위해 왕녀로 봉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국가간 혼인에 있어서 왕녀는 실제 현왕의 딸과 누이만이 아닌 넓은 의미의 왕녀로 해석하고 접근해야한다.

백제 왕녀에 대한 기록은 한국측 사료에는 없고 □□日本書紀□□에만 실려 있다. □□日本書紀□□에 만 기록이 있다는 것은 자료적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日本書紀□□에 등장하는 백제 왕녀에 대한 기록 전체를 제시하고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가) 應神紀 39년 춘2월조

· 39년(428) 봄2월 백제 直支王(毗有王)이 누이 新齊都媛을 보내어 섬기게 하였다. 이에 新齊都媛은 7婦女를 거느리고 와서 歸化<sup>29)</sup>하였다.<sup>30)</sup>

#### (나) 雄略紀 2년 추7월조

· 2년(458) 가을7월 백제의 池津媛은 천황<sup>31)</sup>이 장차 부르려고 하는 것을 어기고, 石川楯과 음란한 짓을 하였다.<舊本에 石河股合首의 선조 楯이라 하였다> 천황이 크게 노하여 大伴室屋大連에게 詔하여 來目部로 하여금 두 남녀의 사지를 나무에 묶어 임시로 만든 나무자리 위에 놓고 불로 태워 죽였다.<百濟新撰에서 말하였다. 己巳年 蓋鹵王이 즉위하였다. 천황이 阿禮奴跪를 보내 女郎을 청하였다. 백제는 慕尼夫人의 딸 適稽女郎을 단장하여 천황에게 바쳤다><sup>32)</sup>

#### (다) 雄略紀 5년 하4월조

· 5년(461) 여름4월 백제의 加須利君<蓋鹵王이다>은 池津媛<適稽女郎이다>을 태워죽였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협의하여 “옛적에 여인을 바쳐 采女로 하였다. 그런데 무례하여 우리나라의 이름을 떨어뜨렸다. 지금부터 여인을 바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우 軍君<昆支다>에게 고하여 “너는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섬겨라”고 말하였다.<sup>33)</sup>

백제왕녀 관련 기사 중 유기적 구성에 열쇠를 쥐고 있는 기사는 (가)의 應神紀 기사이다.

29) □□日本書紀□□ 속에 나오는 歸化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항례적인 논점이 있다. 이 문제를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귀화가 보다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적 해두고 싶다. 귀화라는 개념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성립된 7세기말 이후 율령시대의 王化思想에 젖어있던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이므로 여기서 연대상으로도 맞지 않는 용어라는 인식이 충분히 공감되고 있다.(김은숙, 1985, 「日本古代의 歸化의 概念」, □□邊大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박석순, 2000, 「日本古代國家에서의 化的 概念」, □□東洋史學研究□□70) 아울러 □□日本書紀□□보다 일찍 편찬된 □□古事記□□에 외래자를 귀화가 아닌 '參渡來'로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박하고 진실에 가깝다고 본 지적(延敏洙, 「書評 歸化人と古代國家」□□日本歷史研究□□4, 일본역사연구회)에 찬동한다.

30) 三十九年春二月 百濟直支王 遣其妹新齊都媛以令仕 爰新齊都媛 率七婦女 而來歸焉

31) 번역문에서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다는 의미로 天皇을 사용했지만, 천황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天皇이란 君主號는 日本이란 國號와 함께 飛鳥淨御原令(天武10년[681년]~14년[685년])의 公式令에서 처음 公定되었으며, 천황호의 사용은 아무리 빨라도 7세기 후반을 넘지못한다.(정효운, 2007,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임나일본부」, □□동북아문화연구□□17) 따라서 이글에서 5~6세기의 사실관계를 서술할 때는 倭王이란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한다.

32) 二年秋七月 百濟池津媛 違天皇將幸 媼於石川楯<舊本云 石河股合首祖楯> 天皇大怒 詔大伴室屋大連 使來目部 張夫婦四支於木 置假殿上 以火燒死<百濟新撰云 己巳年 蓋鹵王立 天皇遣阿禮奴跪 來索女郎 百濟莊飾慕尼夫人 女 曰 適稽女郎 貢進於天皇>

33) (五年)夏四月 百濟加須利君<蓋鹵王也> 飛聞池津媛之所燔殺<適稽女郎也> 以壽議曰 昔貢女人爲采女 以既無禮 失我國名 自今以後 不合貢女 乃告其弟 軍君<昆支也> 曰 汝宜往日本以事天皇

(가)의 應神紀 기사는 백제 왕녀의 도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일단 마지막으로 돌리고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진 雄略紀의 사료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웅략기 2년과 5년조의 두 사료는 池津媛과 適稽女郎의 활동을 서로 관련지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를 함께 살펴보겠다.

(나)의 사료 웅략기 2년 추7월조는 백제 여성인 池津媛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웅략 2년(458) 백제의 池津媛이 천황 몰래 石川楯와 밀통을 하였다가 화형을 당해 죽었다는 것이며 그 분주에 기사년 개로왕이 즉위하였을 때 천황이 阿禮奴跪를 보내 女郎을 구하였기 때문에, 백제는 慕尼夫人의 딸을 단장하여 適稽女郎이라 하고 천황에게 바쳤다고 百濟新撰<sup>4)</sup>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아마도 □□日本書紀□□ 편찬자는 慕尼夫人의 딸 適稽女郎을 池津媛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여, 원문에 있는 池津媛의 사건설명에 분주를 덧붙여 適稽女郎이 언제 어떤 경로로 왜국에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의 사료 웅략기 5년 하4월조는 昆支의 도왜와 이후 武寧王의 탄생을 말해주는 기사로 매우 잘 알려진 기록이다. 내용을 보면 461년 하4월, (나) 사료에서 말한 사건 즉 지진원의 화형사건을 듣게 된 개로왕은 여성을 왜에 보내는 일을 중지하고 이제 동생인 昆支, 즉 남자를 왜에 보내게 했다. 다시 말해서 곤지가 왜에 가기 이전에 ‘昔貢女人爲采女’라는 내용처럼, 예전부터 采女를 왜에 보내던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池津媛이란 여성의 파견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池津媛 이전에도 백제에서 왜에 여인을 보내는 관행이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앞서 기록된 (가) 사료 응신기 39년(428) 新齊都媛의 도왜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개로왕의 말이 사실에 기반을 둔 것으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池津媛이 불륜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 사건 때문에 곤지가 파견되었다는 점이 사실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겠<sup>35)</sup> 하지만 곤지 파견이전에 백제여성의 왜 파견 사례들이 있었고 이들을 采女라고 불렀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백제에서 왜에 여성을 보내는 관행에 따라 왜에 파견된 지진원이란 여성이 왜에서 밀통문제로 사망한 것은 (나)에서 알 수 있듯이 458년이다. 그럼 그녀는 언제 왜국에 파견되었을까. 지진원이 파견된 해에 대해서는 기사중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日本書紀□□ 편찬자가 지진원과 동일인으로 파악한 적계여왕이 파견된 해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다. 그럼 (나)의 기사중 적계여왕이 파견되었다는 해, 즉 己巳年이자 개로왕의 즉위년인 해가 언제인지 살펴보자. 5세기의 기사년은 429년과 489년이 있는데, 둘 다 개로왕의 치세기간(455-475)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해를 말하는지 얼른 단정하기 어렵다. 또 개로왕이 즉위한 것은 455년이므로, 가능한 모든 연도는 429년과 455년, 489년이다. 기사내용 중 기사년을 중시하면 429년과 489년이 가능하고, 개로왕의 즉위를 중시하면 455년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461년 곤지가 도왜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왕녀의 도왜는 이것보다는 앞선 사실이어야 한다. 가

34) 武寧王陵의 발견이후 誌石의 斯麻라는 인명이 해석되면서 百濟新撰의 사료적 신빙성은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百濟新撰은 백제 왕족인 곤지를 시조로 하는 후예씨족들이 시조전승적인 사료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두차례의 손질을 거쳐 윤색·개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이근우, 1994, 박사논문)

35) 곤지의 도왜가 그녀의 죽음과 관계가 크게 없을 것이란 점은 일찍이 池內宏에 의해 지적되었다. 池內宏, 1970, □□日本上代史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東京, 122쪽. 池內宏은 池津媛을 응신기 39년조에 나오는 7명의 婦女 중의 하나로 보고 이를 適稽女郎과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능한 것은 429년과 455년이지만,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개로왕 즉위가 아니라 기사년이란 간지이기 때문에 429년을 취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본 기사를 429년으로 보고 적계여량은 429년에 도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36)</sup>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점은 458년에 지진원이란 백제왕녀가 밀통사건에 관련되어 왜에서 사망하였으며, 지진원과 동일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29년에 적계여량이란 왕녀가 백제에서 왜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29년에 왜로 보내어진 적계여량이란 여성을 458년에 사망한 지진원과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까. 옹략기 2년조와 5년조에 池津媛의 사례와 適稽女郎의 사례가 각각 본문과 분주의 형태로 배치된 것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日本書紀□□ 편찬자가 池津媛이 곧 適稽女郎이라고 믿었던 것에서 연유한다. 많은 연구자들 역시 지진원은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빙하면서 분주에 기록된 적계여량은 또 다른 인물로 보지 않고, □□日本書紀□□ 편찬자의 이해처럼 동일인이라고 보고 있다. 동일인물로 보는 근거는 우선 명칭이다. 池津媛의媛은 일본식의 명칭이며, 適稽女郎의 女郎<sup>37)</sup>은 백제식의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인에 대한 다른 표기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에하시토’라고 혼독되는 女郎이 일본용어가 아니라 신분이 높은 여성을 가리키는 백제 내지 삼국 전체에서 통용되고 있던 일반적 호칭으로서의 고대 韓語라는 점, 그리고 적계여량의 어머니인 慕尼夫人의 경우 ‘하시카시’라고 혼독되는 夫人 또한 왕비·여성 왕족의 호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칭호였다는 점에서 適稽女郎과 慕尼夫人 등의 표기가 백제의 원사료에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고<sup>38)</sup> 게다가 適稽라는 명칭은 백제 선대의 왕명중 責稽의 사례와 유사하여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한다.<sup>39)</sup>

하지만 이것은 지진원과 적계여량이 각각 일본식과 백제식의 인명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정도이지, 이들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혀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게다가 사료 서술의 맥락상 대체로 지명이나 인명 같은 고유명사의 경우 처음 등장하는 곳에 단순분주가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sup>40)</sup>인데, 지진원과 적계여량의 서술형태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벗어나 있다. 이러한 서술의 맥락을 보면 동일인설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池津媛이란 백제여성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남성과의 密通사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맥을 보면 지진원이 화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개로왕이 전해들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461년 당시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진원의 사망사건은 근년의 일인 듯하다. 이야기의 맥락상 앞의 458년 사망기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적계여량과 지진원을 동일인이라고 볼때 429년에 도왜한 여인이 30여년이 지난 458년에 와서 새삼스럽게 밀통사건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인의 생물학적 나이를 고려

36) 己巳年인 429년에 비유왕이 즉위했다고 보기도 한다.(三品彰英, 200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 天山畝, 東京, 69-70쪽) 기사년을 중십축으로 하여 왕명을 변경해서 이해하는 기존의 방법에 대해, 이재석은 개로왕을 중십축으로 하여 기사년 즉위를 이해하고 있다.(이재석, 2001, 「日本書紀 속의 百濟 王曆 小考」, □□日本學□□20,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37) 女郎은 한자어용례를 보면 여성으로서 남성의 재주가 있는 사람을 뜻하나 일반적으로 신분이 높은 여성을 부르는 말로 흔히 쓰인다.

38) 이근우 1994,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39) 초고와 근초고, 구수와 근구수, 개루와 개로 등의 경우와 같이 백제 왕실에서는 선대의 왕명을 다시 쓰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40) 이강래, 2004,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분주 검토」, □□史學研究□□74, 한국사학회, 68쪽



해 볼 때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듯 하다. 사건의 특성상, 밀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458년경, 문제의 여성은 아직 젊은 나이였을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제 궁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 남성과의 밀통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는 쪽이 무리가 없다. 따라서 458년에 사망한 여성과 429년에 도왜한 여성은 동일인이 아니며, 각각 별개의 사실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458년에 사망한 池津媛이 왜에 파견된 시기는 언제였을까. 백제의 남성왕족들이 파견된 시기는 주로 양국 왕실의 새 왕이 즉위하는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up>41)</sup>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면, 왕녀의 경우도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왕녀를 파견하는 측인 백제의 개로왕 즉위해, 455년을 상정해보자. 백제 왕족의 파견 관행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한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로왕대의 기록은 상당히 영성하여 치세전반부에 해당하는 기록이 전혀 없다.<sup>42)</sup> □□三國史記□□에서 왕 14년에 해당하는 468년에야 처음 기록이 나타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비교할 자료가 없어서 연대를 상정하긴 어렵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둔다. 다음으로 왕녀를 수용하는 측인 왜국에서 雄略의 즉위년, 457년을 상정해볼 수 있다. □□日本書紀□□의 웅략 원년 기사를 보면 앞서 소개한 采女 출신 童女君의 기록을 포함하여 웅략의 皇后와 3인의 妃에 대한 서술이 있다.<sup>43)</sup> 또 池津媛의 사망기사가 나오는 웅략 2년(458) 7월 기사에 이어서 같은 해 冬10월조에는 采女 日媛에 대한 기록이 있다.<sup>44)</sup> 이때는 웅략의 즉위초기에 해당되며, 지진원의 도왜목적이 왜왕을 모시기 위해서 즉 왜왕과의 혼인을 위해서라면 왜왕의 교체시점인 457년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5)</sup> 따라서 지진원의 도왜시점으로는 웅략 원년인 457년을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지진원은 458년 사망시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450년대에 파견되었다고 보이며, 455년이나 457년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삼을 수 있겠다. 따라서 적계여랑과 지진원은 동일인이 아닌 각각 왜국으로 건너간 파견시점이 서로 다른 2명의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이 두 명의 여성 외에 왜국으로 건너간 여성에는 한명의 사례가 더 있는데 바로 新齊都媛이라는 인물이다.

新齊都媛이 등장하는 사료는 제일 처음에 제시한 (가) 응신기 39년조 춘2월조의 기사이다. 직지가 귀국하고 23년이 지난 428년<sup>46)</sup> 봄2월에 毗有王(427-455)<sup>47)</sup>이 直支王(405-420)<sup>48)</sup>의 누이

41) 田中史生, 2005, □□倭國と渡來人□□, 吉川弘文館, 東京, 33쪽

42) 삼국사기 개로왕 본기에는 집권초기인 13년까지의 기사가 보이지 않는데, 김수태는 이 시기를 對高句麗戰을 위한 정치적 준비작업을 마련한 시기로 설명한다.(김수태, 2000, 「百濟 蓋鹵王代の 對高句麗戰」, □□백제사상의 전쟁□□,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26쪽)

43) □□日本書紀□□ 雄略紀 원년 춘3월조, 立草香幡媛皇女爲皇后〈更名橘媛〉是月 立三妃 元妃葛城圓大臣女曰韓媛 生白髮武廣國押稚日本根子天皇 與稚足媛皇女〈更名栲幡娘皇女〉是皇女侍伊勢大神祠 次有吉備上道臣女稚媛 〈一本云 吉備窪屋臣女〉生二男 長曰磐城皇子 少曰星川稚宮皇子〈見下文〉次有春日和珥臣深目女 曰童女君 生春日大娘皇女〈更名高橋皇女〉童女君者本是采女 天皇與一夜而脈 遂生女子 … 天皇命大連 以女子爲皇女 以母爲妃 是年也 太歲丁酉

44) □□日本書紀□□ 雄略紀 2년 동10월조, 由是皇太后與皇后 聞之大懼 使倭采女日媛舉酒迎進 天皇見采女面貌端麗 形容溫雅 乃和顏悅色曰 …

45) 새로 즉위한 왕은 雄略으로 웅략의 재위기간은 □□日本書紀□□에 의하면 丁酉年 457년에서 己未年 479년이다. 그러나 그의 형인 世子 興의 462년 對宋 遣使(□□宋書□□ 倭國傳)와 충돌되고, 사망연대에 대해서도 □□古事記□□에서 己巳年 489년 124세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이론이 있다.

46) 응신 39년은 戊辰年(308)이지만 수정연대로 보면 428년에 해당한다.

47) 이 기사는 같은 응신기 25년(414)에 나오는 直支王(腆支王) 사망기사와 배치되기 때문에, 기사 속에 직지왕이란 왕명은 誤記일 가능성이 높다. 직지왕의 사망연대에 대해서 이론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三國史記□□를 따라서 420년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응신 39년은 428년에 해당하고, 428년을 □□三國史記□□에서 찾아보면 毗有王 2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사속의 직지왕은 비유왕의 오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新齊都媛을 7부녀와 함께 왜국에 보내어 왜왕을 섬기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新齊都媛이 왜로 건너가서 왜왕을 섬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의 池津媛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天皇將幸'<sup>49)</sup> 즉 왜왕과의 혼인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신제도원은 왜왕과의 혼인을 위해서 도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왕과 혼인을 하기 위해 백제에서 간 여성은 新齊都媛이외에 池津媛과 適稽女郎의 사례가 있다.

이들 여성 중에서 백제의 王女임을 적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王妹로 기록된 新齊都媛의 경우뿐이다. 다른 두 사례, 池津媛과 適稽女郎의 경우는 어떤 신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적계여랑의 경우는 慕尼夫人의 딸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여 왕족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진원의 경우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다만 중국에서 인접국으로 혼인을 위해 여성을 보낼 때 황녀가 아닌 종실의 딸과 후궁을 皇女로 봉하여 公主라는 칭호를 내려서 보내고 있는데, 이들은 비록 천자의 친딸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혼인직전 황녀로 봉하는 것이다. 중국측 사례를 참고해보면 이들 모두 王女 혹은 왕녀에 준하는 지위를 받은 여성들일 가능성이 있다.

환기하자면,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이 池津媛과 適稽女郎을 동일인물로 보고 있었지만, 지진원과 적계여랑은 각각 왜국에 파견된 서로 다른 인물이었다. 위에서 사망의 원인과 파견시점을 검토한 결과 지진원은 적계여랑과 동일인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계여랑의 사례를 굳이 다른 인물과 합치시키려고 한다면, 파견시점상 池津媛보다는 오히려 新齊都媛 쪽에 합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기록된 연대가 다르고 둘의 인명 표기에서 비슷한 점을 간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3가지 사례가 각각 존재하였을 것에 더 무게를 두겠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왜로 파견된 백제왕녀들의 구체적인 인명과 활동기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백제왕녀들의 왜 파견기간**

百濟王 百濟 王女	久爾辛王 毗有王 (420-427) (427-455)	蓋鹵王 (455-475)	□□日本書紀□□
新齊都媛: 왕의 누이	428-?		應神紀 39년 춘2월조
適稽女郎: 慕尼夫人 딸	429-?		雄略紀 2년조 雄略紀 5년조
池津媛		?50) -458	雄略紀 2년조 雄略紀 5년조

표에서 보듯이 428년 王의 누이인 新齊都媛을 파견한 이래 461년 昆支를 파견하기 이전까지 백제왕녀들이 왜에 파견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新齊都媛·適稽女郎·池津媛 등이 그 왕녀들에 해당된다. 5세기 전반기 백제왕실은 왕녀를 왜에 파견하여 혼인을 통해 왜국과 통호하고 있었다.

## 2) 백제 왕녀의 혼인

백제와 왜 왕실간의 혼인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우선 新齊都媛이 혼인하러 간 해 428년

48) 전지왕의 사망과 구이신왕, 비유왕의 즉위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三品彰英, 200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下, 天山舎, 東京, 51-53쪽)

49) □□日本書紀□□ 雄略紀 2년(458) 추7월조, 百濟池津媛 違天皇將幸 姪於石川楯

50) 450년대에 파견되었다고 보이며, 455년이나 457년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삼을 수 있겠다.

춘 2월을 □□三國史記□□에서 찾아보면, 같은 달에 '봄 2월 왜국의 사신이 왔는데 從자가 50인이었다'는 기록이 있다.<sup>51)</sup> 사신과견단의 구체적인 숫자를 특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종자가 50인이나 되는 것을 보면 일상적인 사신과견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新齊都媛의 혼인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왜국사신단의 성격에 대해 왕실간 혼인이 있는 직후 이에 대한 답례사절단<sup>52)</sup>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新齊都媛이 도왜한 봄 2월이란 같은 달에 왜국 사신이 도착한 점에 주목해보자. 왜에서 백제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달을 본다. 소요기간을 고려해 볼 때, 신제도원이 왜로 가서 왜왕과의 혼인식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 뒤, 이를 알리기 위해서 왜국에서 사신이 출발해서 다시 백제에 도착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다. 시간적으로 부자연스런 느낌이다.

왜국사신단은 답례사절단 보다는 혼인을 요청하는 사신단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백제의 東城王이 신라와 혼인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 먼저 사신을 보내어 혼인을 청하고 난 뒤 신라에서 伊伐滄 比智의 딸을 보내고 있다.<sup>53)</sup> 이것은 사료 (나) 適稽女郎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왜측에서 먼저 阿禮奴跪를 보내어 혼인할 여성을 청하고 난 뒤에 왕녀의 혼인이 있었다.<sup>54)</sup> 이처럼 왕녀의 혼인에서 사신단의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왜사신단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임무인 請婚을 위해 백제에 왔다고 짐작된다.

본래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혼과 동시에 納采<sup>55)</sup>를 위한 상당한 예물을 가져가야 하는데,<sup>56)</sup> 중국 漢代의 경우 왕실의 납채의식은 상당히 사치스러워서 황금 20만근, 말 20필을 보낸다고 한다. 통일기이긴 하지만 신라 神文王대에 새로 왕비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納采로 보내는 예물이 상세히 소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비단이 15수레이고 쌀·술·기름·꿀·간장·된장·포·젓갈이 135수레이었으며,租가 150수레이었다고 한다.<sup>57)</sup>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보면, 왜국에서 온 사신과견단은 혼인의 중개자로서 우선 백제왕실에 청혼의 예를 올리고 동시에 納采를 위한 상당한 예물을 가져왔을 것이다.

백제왕실측에 혼인의 허락을 받고 나면, 사신단은 백제왕녀의 일행을 수행하여 왜국의 왕실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밀접한 교류를 맺고 있던 백제이지만, 바다 건너있는 왜 왕실을 찾아가는 것은 왜측 사신의 도움 없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중국 唐나라 文成公主의 혼인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唐 貞觀 14년(640) 祿東贊을 대표로 하는 吐蕃사신단은 당 조정에 들어와서 혼인을 청한 뒤 이전에 거절되었던 토번의 혼인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5000냥의 황금을 비롯한 수백종류의 진귀한 예물과 함께 당나라를 설득하였다. 이에 당 조정의 혼인허가로 혼인은 이루어지게 되었

51) □□三國史記□□ 백제본기 毗有王 2년 춘2월조, 倭國使至 從者五十人

52) 연민수, 2002, 「古代 韓日 外交史」, □□韓國古代史研究□□27, 208쪽

53) □□三國史記□□ 신라본기 炤知王 15년(493) 춘3월조, 春三月 百濟王牟大 遣使請婚 王以伊伐滄比智女送之. □□三國史記□□ 백제본기 東城王 15년(493) 춘3월조, 春三月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滄比智女歸之.

54) □□日本書紀□□ 雄略紀 2년 추7월조 분주, 百濟新撰云 己巳年 蓋鹵王立 天皇遣阿禮奴跪 來索女郎 百濟莊飾慕尼夫人女 曰 適稽女郎 貢進於天皇

55) 納徵 또는 納幣라고 하여 혼인에 앞서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聘財를 혼인예물로 증여하는 절차이다. 시대에 따라 六禮에도 변화가 있고 俗禮가 있었지만, 어느 경우에도 納幣는 혼인에 있어 빠지지 않는 중요한 절차이다.(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 2005, □□중국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189쪽)

56) 김기철, 1996, 「中國 古代의 婚姻과 紊亂」, □□民族과 文化□□4,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400쪽

57) □□三國史記□□ 신라본기 神文王 3년(683)조, 納一吉滄金欽運少女爲夫人 先差伊滄文穎波珍滄三光定期 以大阿滄智常納采 幣帛十五擧 米酒油蜜醬鼓脯醢一百三十五擧 租一百五十車

고, 祿東贊은 이후 문성공주가 貞觀 15년(641) 토번으로 출가할 때 일행을 수행해서 토번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예를 보면, 비유왕 2년(428) 춘 2월 백제에 도착한 왜 사신단은 新齊都媛의 혼인을 청하면서 예물을 올리고 왜로 가는 왕녀일행을 수행하기 위한 왜측의 혼인 준비 사신단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에서 적계여랑의 사례에서 혼인을 청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왜측의 阿禮奴跪에 대해 살펴보자. 사료 속에서 그는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아마도 혼인을 청하는 상당한 규모의 사신단 대표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듯 하다. 혼인에 있어서 청혼을 하는 중매자와 초기 납채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아례노래는 왜국 조정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인물로 짐작된다. 당나라 文成公主의 혼인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祿東贊<sup>58)</sup>의 역할을 다시 떠올려보면, 적계여랑의 혼인을 청한 阿禮奴跪 역시 당시 왜왕의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王妹인 신제도원이 7명의 부녀와 함께 도왜했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여기서 말하는 婦女는 일반적인 侍從이나 從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시종이나 종자라면 남성을 포함하는 것이 상례인데, 특별히 여성으로만 구성된 것을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 혼인을 위해 왜에서 백제로 건너온 사신단의 종자가 50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왜측의 규모에 비해 왕녀를 보내는 백제측의 7부녀라는 규모는 너무 적은 수이다. 이것은 加羅와 新羅의 혼인의 경우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신라왕녀가 대동한 시종이 100여명<sup>59)</sup>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왕녀가 겨우 7명을 대동하여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백제왕녀와 함께 간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여성을 특기한 것은 이들이 일반적인 신분의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료 속에서는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의 사람들인지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기존에는 7부녀 안에 지진원과 적계여랑을 포함해서 파악하기도 하였다. 제일 먼저 도왜한 新齊都媛에게 7부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들 池津媛適稽女郎이 그 7부녀 안에 포함되어 왜로 간 여성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견시점을 각각 다르게 보는 필자는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7婦女를 받아들이는 왜측에서 보기에 婦女<sup>60)</sup>

58) 이전에도 토번의 송찬감포는 당에 혼인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던 전례가 있었다. 그동안 거절되었던 혼인이 641년에 와서 성립하게 된 데에는 祿東贊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혼인 외에도 내팔왕녀와 송찬감포의 혼인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능력을 알 수 있겠다. 당시 송찬감포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던 祿東贊에 대한 설명을 □□舊唐書□□□□新唐書□□吐蕃傳에서 찾아보면, 그는 뛰어난 야전사령관이자 능력있는 외교관으로 묘사되어 있다. 祿東贊은 국가간 혼인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당 조정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심어놓았던 것 같다.

59) □□三國史記□□신라본기 法興王 9년(522) 춘3월조,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滄比助夫之妹送之 □□日本書紀□□繼體紀 23년(529) 3월조,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巨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因斯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果賜扶余 由是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 爲女從 受而散置諸懸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翻欲還女曰 前承汝聘吾便許婚 今既若斯 請還王女 加羅已富利知伽<未詳> 報云 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王 遂於所經拔刀伽 古跛 布那牟羅三城 亦拔北境五城

60) 婦女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이르는 것으로 본다. 특히 婦의 해석에 관해 日本의 白川靜은 □□說文新義□□에서 기존에 □□說文解字□□에서 婦를 청소용 비를 들고 집을 소제하는 여성이란 어원으로 해석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帚는 주거용 청소도구가 아니라 사당에서 不詳한 것을 치우는 神具로 사용된 비로, 여기에 술을 부어 그 향기로 사당 안을 맑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식은 결혼한 여성이 시가의 사당에 참배하여 시가의 가족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그 예식의 집행자로서 婦란 용어가 생겼다고 하였다. 더욱이 용어가 처음 생긴 殷代에 婦는 여자 중에서도 ‘王族의 여인들’을 지칭하였다고 한다.(이숙인, 2005,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422~423쪽)

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들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했던 것 같다. 즉 이들 모두가 혼인을 위해서 파견된 젊은 여성이 아니었을 수 있으며, 이 중에는 실질적인 생활상의 직능과 문화적 수준을 지닌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파악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사료 상으로는 더 이상 추정할 토대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왕실혼인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이러한 왕실혼인의 경우 자매가 함께 혼인을 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중국 사례 속에서 媵妾制<sup>61)</sup>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媵妾制란 한 여자가 출가할 때, 같은 성을 가진 여동생이나 조카 혹은 시종이 함께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만딸과 결혼하는 남자는 그 여자의 자매나 조카 또한 한꺼번에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媵妾은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첩보다는 지위가 높았으니, 정부인과 첩의 중간에 있다.<sup>62)</sup> 자매가 함께 시집간 최초의 기록은 堯임금이 舜임금에게 娥皇과 女英이라는 두 딸을 시집보내어 아황은 후가 되고 여영은妃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라의 다섯 번째 군주 少康은 즉위하기 전에 유우씨의 백정이었는데 虞思의 두 딸을 동시에 취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殷商 시기로 들어서면서 잉첩제는 제도화되어 성행하기 시작하였고, 漢代 이후에도 이러한 전통이 지속되고 있는 편린을 찾아볼 수 있다. 시집갈 때 동행하는 여성은 대부분 친동생이었는데, 왕실혼인에서 이는 꽤 보편화된 현상이었다.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제11대 垂仁의 경우<sup>63)</sup> 皇后 狹穗姬가 죽자, 재위 15년 2월에 丹波 道主王의 딸 5인을 궁중으로 들여서 그중 제일 큰딸을 皇后로 나머지 아우 3인을妃로 하고 맨 마지막 딸은 얼굴이 못생겨서 丹波로 되돌려보냈다고 한다. 즉 무려 4명의 자매를 동시에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다. 또 18대 反正과 19대 允恭도 역시 皇后의 친동생을妃로 맞이하여 자매를 같이 취하고 있다. 더욱이 新齊都媛의 사례가 기록된 같은 應神紀의 앞부분인 應神기 2년 春3월조 기사를 보면,<sup>64)</sup> 제15대 應神은 皇后뿐 아니라 황후의 언니와 동생도 자신의妃로 삼아서 황후를 포함한 3자매를 함께 거느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應神의 다른妃들도 서로 간에 자매로 기록된 것도 이러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新齊都媛이 도왜한 내용을 기록한 제15대 應神 39년(428)기사 바로 앞 기사인 應神 37년 春2월, 吳王에게

61) 媵妾은 娣媵이라고 하는데, 媵이란 용어는 신부와 姓이 같은 자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同父 자매는 물론 아버지 형제의 딸, 나아가 더 먼 가족의 자매, 같은 집안 내의 연배가 같은 여자, 형제의 딸인 姪까지를 포괄하여 그 대상이 상당히 넓은 개념이다. 결국 잉첩제란 자매가 한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을 말하는데, 원시사회 群婚의 성격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 2005, □□중국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173쪽) □□詩經□□의 「大雅 韓奕」에서 “諸娣從之 祁祁如云”이란 신부가 시집올 때 신부의 여동생과 질녀가 신부를 따라 구름처럼 많은 수가 같이 시집오고 있는 것으로 정식 처(媵妻)를 따라가는 수많은 媵妾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이숙인, 2003, 「중국고대의 질서담론」, □□철학연구□□63, 42쪽)

62) 김원중, 2007, □□혼인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168쪽.

63) 『日本書紀』 垂仁紀 15년 春2월조, 喚丹波五女納於掖庭 第一曰日葉酢媛 第二曰淳葉田瓊入媛 第三曰眞砥野媛 第四曰 瓊入媛 第五曰竹野媛 秋八月壬午朔 立日葉酢媛命爲皇后 以皇后弟之三女爲妃 唯竹野媛者 因形姿醜返於本土 則羞其見返 到葛野自墮輿而死之 故號其地謂墮國 今謂弟國訛也 皇后日葉酢媛命生三男二女 第一曰五十瓊敷入彥命 第二曰大足彥尊 第三曰大中姬命 第四曰倭姬命 第五曰稚城瓊入彥命 妃淳葉田瓊入媛生鐸石別命與膽香足姬命 次妃瓊瓊入媛 生池速別命 稚淺津姬命

64) 『日本書紀』 應神紀 2년 春3월조, 立仲姬爲皇后 后生荒田皇女 大鷦鷯天皇 根鳥皇子 先是天皇以皇后姊高城入姬爲妃 生額田大中彥皇子 大山守皇子 去來眞稚皇子 大原皇女 潯來田皇女 又妃皇后弟弟姬 生阿倍皇女 淡路御原皇女 紀之菟野皇女 次妃和珥臣祖日觸使主之女 宮主宅媛 生菟道稚郎子皇子 矢田皇女 雌鳥皇女 次妃宅媛之弟小甌<小甌 此云烏儺謎> 媛生菟道稚郎姬皇女 次妃河派仲彥女 弟媛 生稚野毛二派皇子<派 此云摩多> 次妃櫻井田部連男鋤之妹系媛 生隼總別皇子 次妃日向泉長媛 生大葉枝皇子 小葉枝皇子 凡是天皇男女并廿王也

공녀 兄媛·弟媛 등 4婦女를 받아들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65)</sup> 『日本書紀』 속에 이러한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왜의 풍속으로는 자매를 같이 취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 측에서도 신라 景文王이 자매를 같이 취한 경우<sup>66)</sup>라든지, 고려시대에 왕이 자매를 동시에 취하여 妃로 삼은 예<sup>67)</sup>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추정도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7婦女 모두가 新齊都媛과 친자매라고 일률적으로 보긴 어렵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서로 간에 혈연관계가 있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록이 영성하여 더 이상 추론할 여지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은 추구해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7婦女의 도왜는 왕녀의 혼인에 따른 특별한 여성인력의 이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백제에서 보내어진 이들 여성들은 왕녀가 왜 왕실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한편 자신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왜 사회에 정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사료 속에서 시종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시종이 왕녀와 동반해서 파견되었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新齊都媛의 경우 동반했던 7부녀가 시종이 아님은 이미 검토하였지만, 7부녀외에 왕녀의 도왜 일행에 시종이 함께 하였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음의 사례들을 비교 자료로 삼아 시종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앞서 이야기한 가라와 신라의 통혼사례<sup>68)</sup>에 나타난 시종 100인의 존재를 다시 떠올려보면, 이들 시종의 실체에 대해서는 가라의 친신라화를 위해 파견된 존재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신라측에서는 이들 시종을 집단적으로 파견하여 가야진출과 친신라화라는 목적을 이룰 하나의 동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sup>69)</sup>

왕녀에 동반한 시종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보면, 우리의 역사경험 속에 있는 고려시대 元출신 공주들의 왕실혼인이 떠오른다. 원 공주들은 고려왕실로 들어오면서 ‘怯怙口’<sup>70)</sup>라는 시종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겁령구는 공주의 배종으로 사적인 신분이면서 또한 고려에서 벼슬을 받아 공적인 신분도 가지고 있었다. 주로 외교정책에 투입되었고 국사를 다루는 중요한 문제나 공녀 선출, 세자의 태를 안치하는 문제까지 다루는 비중있는 임무를 안팎으로 수행했다. 특히 원에 입조하는 문제부터 원나라의 격식, 풍습, 황실과의 관계 조정, 축하 사절단의 규모와 내용 등 고려 조정의 대외 관계 깊숙한 곳까지 그들의 힘이 미치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을 감안해보면 백제왕녀와 동반한 시종들에게 백제가 기대한 바 역시 비슷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본래 왜에서 남성왕족인 質을 수용하는 본질적 의미가 결코 질 자체에 신체적 구속

65) 『日本書紀』 應神紀 37년조, 吳王於是與工女兄媛 弟媛 吳織 穴織 四婦女. 여기서 보이는 兄弟라는 명칭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경우에도 姉妹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66) 『三國遺事』 紀異 四十八景文大王,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文王 3년조, 納寧花夫人弟爲妃

67)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 태조는 王規의 두 딸을 비로 삼아 廣州院부인과 小廣州院부인으로 삼았으며, 또 金行波의 두 딸을 妃로 삼아 大西院부인과 小西院부인으로 삼았다. 고려 文宗은 李子淵의 딸 3명을 太后와 妃로 삼았으며, 仁宗은 李資謙의 딸 2명을 비로 삼는 등 왕실혼에서 자매가 같이 혼인한 예는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으며, 姉妹婚은 고려왕실 혼인의 한 특징으로 규정되고 있다.(권순형, 2005, 「혼인의 다원성과 국제성」, 『혼인과 연애의 풍속』-한국문화사01-, 국사편찬위원회, 66쪽)

68) 『三國史記』 新羅本紀 法興王 9(522년)조와 『日本書紀』 繼體紀 23(529년)조, 『東國輿地勝覽』 소제 釋順德傳을 통해 양국의 통혼시기와 대상이 논의되고 있다.

69) 연민수, 2005, 「6세기 한반도에서 활동한 倭人の 역할」,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184쪽

70) 몽골어 계령구에서 온 말인데, 본래 집안 아이라는 뜻으로 원 공주에게 배속되어 고려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나 수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동반한 賂(人的·物的 자원)에 있는 것<sup>71)</sup>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백제 왕녀의 경우에도 과연 각종 人的 자원을 동반하여 왜측의 요구를 맞춰주었을 것이란 점은 쉽게 납득할 만하다. 백제왕녀는 인적자원인 시종들 뿐만 아니라, 物的資源도 상당히 가져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의 경우, 漢代 처음으로 이민족인 匈奴와 혼인하였을 때 資裝費라고 해서 온갖 호화사치품을 혼수품으로 주었는데, 이 양이 엄청나서 흉노는 이것을 다시 소그드, 인도까지 판매했다고 한다. 또 文成公主는 각종 곡식과 채소 종자, 공예품, 약재, 차, 책등을 가져갔는데, 이때 가져간 여러 가지 선진문화와 선진물품이 이후 토번의 전성기에 기여한 바는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漢나라때 烏孫<sup>72)</sup>으로 건너간 細君 공주<sup>73)</sup>의 경우, 자신의 거처에서 자주 연회를 베풀면서 자신이 고국에서 가져온 귀중품들을 관료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데 활용하였다는 것을 보면, 왕녀가 가져간 물품은 혼인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나중에는 인접국에서 공주 그 자체보다 그녀들이 가져오는 물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서 그 물품을 구하기 위해 혼인을 청했다는 기록까지 있는 것을 보면, 왕녀가 가져간 물품 역시 중요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제왕녀들 역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 3) 고대의 采女와 왕실혼

백제에서 건너간 왕녀들은 □□日本書紀□□ 속에 采女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采女라고 하면 우선 고려시대의 貢女<sup>74)</sup>를 떠올리거나 조선시대 왕실의 하급 宮女群를 떠올린다. 과연 고대 왜국 왕실에서 채녀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어떤 위상을 가진 존재였을까. 채녀의 기원과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래 채녀라는 것은 중국 고대왕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後漢때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後漢書□□에 따르면 후한 광무제때<sup>75)</sup> 良家の 童女출신으로 后妃를 섬기는 하급 女官으로 처음 제정하였으나, 실상은 황제를 섬기는 예비 后妃群의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後漢書□□의 기록에 後宮의 采女는 수천인으로 이들을 위한 의식의 비용이 하루에 수백금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채녀의 수가 많았으며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는 중국의 東晉말에서 南北朝초기에 들어왔는데, 중국으로부터 직접 도입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통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76)</sup> 당의 율령제 도입과 함께 제도화되었

71) 나행주, 2006, 「왜 왕권과 백제·신라의 質-왜국의 질도입·수용의 의미-」, □□日本歷史研究□□24, 일본사학회

72) 烏孫은 천산산맥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한나라 당시 서역최대의 대국으로 이해된다. □□漢書□□ 서역전에는 인구 12만, 인구 63만, 병사 18만8천8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손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까마귀의 자손이란 뜻으로 나라를 건국한 첫 번째 왕 昆莫의 출생전승에서 유래되었다.

73) 細君은 □□漢書□□ 서역전에 의하면 江都王 劉建의 딸로 기록되어 있는데, 세군이 오손으로 시집간 다음해에 한 조정에서 막대한 양의 재물을 세군에게 보내주었다. 한에서 보내온 재물은 오손에서 細君의 정치적 지위 안정화에 유용하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澤田勳, 1996, □□匈奴-古代遊牧國家の興亡□□(사와다 이사오, 2004, □□흉노□□, 아이필드, 86쪽)

74)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元宗 15년(1274)에 元나라는 귀순한 南宋군사들에게 처를 얻어준다는 구실로 140명의 부녀자를 요구해서 고려조정은 결혼도감이라는 특별관청을 만들어 전국의 민가를 뒤져서 여성을 차출하였다.

75) □□後漢書□□ 皇后紀 第十上, 及光武中興 ……置美人 宮人 采女三等

76) 曾我部靜雄, 1970, □□律令を中心とした日中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東京

다고 한다. 채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日本書紀□□ 仁德紀 40년조의 采女 磐坂媛의 기록인데 여기서 채녀 자체보다는 채녀 磐坂媛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는 가운데 언급된 것이다. 채녀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서술된 것은 雄略紀인데, 여기서는 채녀출신으로 정식의 비가 된 童女君(와라와키미)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sup>77)</sup> 당시 황후 외에 3인의 비가 있었는데 그중 한명이 童女君으로, 그녀는 대화분지의 유력호족인 和珥씨의 딸이었다. 당시는 皇后妃 등의 後宮조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은 □□日本書紀□□의 편자가 후세의 내용으로 수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78)</sup> 일찍부터 왕실내에 존재하던 채녀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것은 646년의 조칙(大化改新の詔)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 채녀는 주로 新嘗祭(니나메제)<sup>79)</sup>나 大嘗祭(다이조제)<sup>80)</sup>와 같은 궁중내 신과 관련된 제사의 일을 보는 여성 하급 宮人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7세기중반 제도화이후 채녀의 역할에 대해, 민속학계에서는 채녀가 출신지방의 신을 모시는 巫女로서의 종교성을 지니고 결과적으로 궁중신앙을 각 지방으로 선포시키고 종교적으로 중앙정부에 복속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역사학계에서는 기존에 민속학계에서 논의한 채녀의 종교적 기능도 인정하면서 채녀를 왜왕권에 귀속하고 충성하는 표시로 지방호족들이 바친 정치적 인질로 규정하여, 정치적 복속의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81)</sup>

그러나 7세기 중반 제도화이전에도 채녀는 존재하였고 이때 이들이 보여준 활동과 직능은 상당히 다양했다. 채녀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제도화 이후가 아니라, 제도화이전인 雄略紀이다.<sup>82)</sup> 웅략기에는 채녀 관련기록이 원년, 2년, 5년, 9년, 12년, 13년에 지속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제도화이전에 존재하던 채녀는 왕에게 직접 예속되어 근시하는 자로, 이들의 역할은 왕 측근에서의 단순한 식사시중 외에 왕명의 전달, 신변경호, 궁중내 신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83)</sup>

이때의 채녀는 하급의 궁인이 아니었으며, 왕과의 사적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고 이들로 인해 왕통을 이어 왕실의 구성원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우선 이들 채녀중에서 천황의 자녀를 출산한 예로는 위에서 언급한 雄略천황대 童女君을 비롯하여, 敏達천황의 채녀 伊勢大鹿小熊의 딸이 太姬와 糠手姬를 낳았고, 舒明天황의 吉備國 채녀가 蚊屋왕자를, 天智천황의 채녀 伊賀采

77) □□日本書紀□□ 雄略紀 元年 春三月條

78) 이정희, 2000, 「古代 日本의 采女制度」, □□日本學報□□44, 한국일본학회, 581쪽

79) 新嘗祭는 11월 23일에 행하는 宮中 행사로 천황이 햇곡식을 천지의 여러 신들에게 바치고 천황 자신이 차려 먹기도 하는 수확의례이자 궁중 제사이다. 원래는 민간에서 널리 행해지던 수확제 및 풍요제 성격을 지닌 의례였는데, 畿内の 대화정권이 전국을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이를 국가적인 의례로 수용·정착시킨 것이다.

80) 大嘗祭는 천황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新嘗祭를 말하는데, 성년식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大嘗祭는 천황이 정식으로 祖上神으로부터 천황의 자격을 부여받는 제사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7세기 후반 天武천황무렵에 장엄한 의례로 제도화되었다고 한다.(이근우, 2002, 「古代 天皇制의 성립과 변질」, □□日本歷史研究□□ 16, 31쪽)

81) 門脇禎二, 1965, □□采女□□, 中央公論社. 北山茂夫, 1976, □□萬葉時代□□, 岩波書店.(慎仙香, 2007, 「우네메의 제도적 역할과 문학적 전승」, □□日本研究□□33,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54쪽)

82) 웅략기는 부민제 및 씨성제적인 원리의 단서라고 할 수 있는 人制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人制는 지방 유력호족들이 특정한 職掌을 갖고 大王에게 봉사하는 체제로, 丈刀人·典曹人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이근우, 2005, 「5세기의 일본열도」,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184쪽)

83) 일본은 중국의 후궁제도를 모방했으나 환관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환관이 담당했던 중요한 직무들을 여성 궁인들이 담당했다. 따라서 천황을 근시하는 존재로서 여성 궁인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다.(日本綜合女性史研究會, 2006, □□지위와 역할을 통해 본 일본여성의 어제와 오늘□□, 61쪽)



女宅子娘이 大友왕자를 낳은 예 등이 있다. 결국 □□日本書紀□□ 속에서 채녀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거나 또는 본인 자신이 채녀를 어머니로 하는 왕은 仁德履中反正·允恭雄略敏達 舒明·天智·天武 등으로 4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대부분의 왕이 이에 해당한다.<sup>84)</sup>

게다가 채녀가 제사와 관련된 직역을 가진 것은 고대 왜왕의 역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고대의 왜왕이 전국의 관사와 능묘에 폐백을 바치는 존재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제사를 통괄하는 종교적 역할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820년대까지 천황의 정식 복장이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하는 白裝束의 帛衣였다<sup>85)</sup>는 점을 인식한다면, 채녀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급의 궁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채녀가 제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곧 왜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실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급 궁인으로서의 채녀의 모습은 7세기중반 제도화이후의 모습이다. 646년 조칙에 기록된 대왕의 祭祀나 神祀를 모시는 채녀의 모습은 원래 이들이 왕을 近侍하는 과정에서 행한 역할의 한 부분이 점차 특화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sup>86)</sup>

최근 일본학계에서는 종래 채녀를 지방호족으로부터 차출한 인질적 존재로만 보는 것이 일면적 고찰이었다는 점에 합의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의 정치적 비중에 주목하여 고대 여성의 정치참여 전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sup>87)</sup> 일본학계의 이러한 이해를 깊이 유념하고자 한다. 이 점을 숙고할 때, 백제왕녀의 사례가 나오는 초기의 채녀<sup>88)</sup>는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필, 근시하면서 혼인관계도 맺을 수 있는 예비 后妃群<sup>89)</sup>으로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백제 왕녀들은 왜왕과의 혼인을 위해 도왜한 것 뿐 아니라, 왜 왕실내에서 후비의 신분에도 해당하는 지위였을 것으로 본다.<sup>90)</sup>

그렇다면 백제왕녀에 의한 왕실혼인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백제 이외의 나라에서 여성 왕실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간 혼인과 인적 교류활동에 포커스를 두고 동아시아<sup>91)</sup>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서 여성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거나 외교의 일선에 나서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약한 사례는 흔치 않다. 다만 여

84) 이정희, 2000, 「古代 日本의 采女制度」, □□日本學報□□44, 한국일본학회, 584쪽

85) 이근우, 2002, 「古代 天皇制의 성립과 변질」, □□日本歷史研究□□16, 47쪽

86) 大化改新이후 中央貴族 출신 여성들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채녀는 본래의 위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들의 신분은 상당히 하강되어, 이전에는 천황 직속이던 신분이 이후 후궁의 최하급 잡역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변화상은 채녀와 관련된 문학적 전승에서도 간취된다고 한다.(愼仙香, 2007, 「우네메의 제도적 역할과 문학적 전승」, □□日本研究□□33,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87) 日本綜合女性史研究會, 2006, □□지위와 역할을 통해 본 일본여성의 어제와 오늘□□, 62-63쪽

88) 다만 백제왕녀들이 채녀였다는 점이 당대의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혼인을 위해 도왜한 백제왕녀에 대해 편찬자가 후대 왕실에서 널리 사용되던 채녀라는 명칭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백제의 왕녀들이 채녀라는 하급 신분으로서 천황에게 봉사하였다는 식의 이해가 선택되어 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8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왜에는 당시 皇后·妃 등의 후궁조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후대에 널리 쓰이는 後宮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90) 일본 奈良縣 中宮寺에는 고구려사람 加西湓 등이 밑그림을 그리고 백제 采女들이 자수를 놓았다는 天壽國曼茶羅繡帳이라는 것이 전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백제 采女들이 만들었는지의 여부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백제에서 온 여성들에 대한 기억과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회적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한국의 전통 공예기술□□, 373쪽)

91)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걸친 지역에서 전개된 고대국가의 전개과정은 동시대적 평행관계에 있으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서로간의 긴밀한 교류를 주고받고, 서로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동아시아적 관점은 유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성이 전면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나마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례는 찾아 볼 수 있는데, 왕실의 한 구성원인 왕녀들의 혼인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우선 사료가 많은 중국왕조에서 이루어진 왕실간 혼인 사례를 찾아보았다. 고대 중국왕조의 여성 왕실구성원이 혼인을 위해 다른 나라로 건너간 사례는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어서, 다음의 【표 3】과 같이 총 30여건의 사례를 추출했다.

【표 3】 중국 和蕃公主들의 혼인연대와 혼인대상<sup>92)</sup>

王朝	婚姻年代	尙主國	尙主國	尙主國
		公主名 尙主者	公主名 尙主者	公主名 尙主者
前漢	惠帝3 (B.C.192) 文帝 (B.C.174-160) 景帝5 (B.C.152) 元封 (B.C.110-105)  竟寧元 (B.C.33)	【匈奴】 公主 冒頓單于 ※ 公主 老上單于 ※ 公主 軍臣單于 ※  (王昭君) 呼韓邪單于 ※	【烏孫】 烏孫公主 昆莫 ※ (解憂) 岑陁 ※	
東魏	興和2 (A.D.540)	【突厥】 長樂公主 土門 千金公主 他鉢可汗	【蠕蠕】 蘭陵公主 菴羅辰	
西魏	大統17 (551)			
北周	大象元 (579)			
隋	開皇16 (596) 開皇17 (597) 開皇19 (599)	安義公主 突利可汗 義成公主 啓民可汗	【吐谷渾】 先化公主 伏	
	大業5 (609) 大業10 (614)	信義公主 曷薩那可汗		【高昌】 華容公主 麴伯雅
唐	貞觀14 (640)		弘化公主 諾曷鉢	
	貞觀15 (641) 神龍3 (707) 先天2 (713)	(南和縣主 王子楊我之)		【吐蕃】 文成公主 弄讚 ※ 金城公主 贊普 ※
	開元5 (717) 開元10 (722) 開元11 (723)	金河公主 突騎施可汗	【奚】 固安公主 李大酺  固安公主 李魯蘇 東光公主 李魯蘇	【契丹】 永樂公主 李失活 燕郡公主 李鬱于
	開元13 (725)			東華公主 李邵固
	天寶3 (744) 天寶4 (745)	【寧遠國】 和義公主 爛達干	宜芳公主 李延寵	靜樂公主 李懷節
	乾元元 (758)	【廻紇】 寧國公主 葛勒可汗 (肅宗의 딸)		

92) □□冊府元龜□□(卷978~979 外臣部 和親)를 근거로 작성한 坂元義種의 표를 참조하여 수정함. 坂元義種, 1978, 「古代東아시아의國際關係-和親·冊封·使節よりみたる」, □□古代東아시아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東京(김기섭 역, 1994, □□고대 한일관계사의 이해-倭□□, 이론과실천, 395쪽)

大曆4 (769) 貞元3 (787)	崇徽公主 牟羽可汗 威安公主 天親可汗 (德宗의 딸)
長慶元 (821)	太和公主 崇德可汗 (穆宗의 妹)

위의 표를 보면 중국왕녀들에 의한 왕실혼은 총 30여 차례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혼인의 특성이란 것이 한쪽이 아무리 강력히 요청한다고 해도 또는 양쪽에서 이미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쉽게 맺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 게다가 나라들 사이의 혼인이란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왕실은 匈奴를 시작으로 烏孫, 吐蕃, 回紇 등 많은 주변국과 혼인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和親<sup>93)</sup>은 외교상의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혼인을 위해 왕실을 떠나 주변국으로 시집간 여성들을 중국사에서는 和蕃公主<sup>94)</sup> 또는 入蕃公主라고 한다. 문자 그대로 和蕃, 즉 변방 민족과의 화평을 위해 시집보낸 공주들을 말한다. 이들은 중국 前漢부터 唐나라 때 漢北과 西域 등지로 출가하였는데, 유명한 사례로는 흉노에게 출가한 王昭君, 烏孫에게 출가한 細君과 解憂公主, 吐蕃에게 출가한 文成公主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문성공주의 사례는 매우 저명하다. 화번공주 중에는 중국 천자의 친딸도 있었지만, 이들이 모두 천자의 친자녀는 아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宗室의 자녀로서 혼인을 위해 公主로 봉해진 여성들이다. 받아들이는 측에게는 이들이 진짜 중국 천자의 친딸인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왕조로부터 왕실여성이 妻로 삼아지기 위해 자신들의 나라 또는 집단에 보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왕조로부터 자신들의 나라와 집단이 특별 처우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천자의 친딸과 혼인한 回紇을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回紇은 천자의 眞女인 寧國公主와 혼인하였다. 이후로도 천자의 진녀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회홀이 다른 제번에 비해 반드시 국력이 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또 당 왕조에서는 비슷한 시기 吐谷渾왕과 高昌왕, 突厥가한에게 각각 先化公主·華容公主·信義公主를 강가시켰다. 이들이 모두 중국의 당왕조보다 강력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단지 당 왕조는 이들을 통해 和親에 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물론 화번공주 자체는 인신제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을 보낸 중국왕조가 주변 제번에 신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95)</sup> 이른바 대등한 관계인 것이다. 물론 화친관계 속에서 상하관계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간 혼인은 중국왕조의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책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93) 김한규, 1981, 「漢代 中國의 世界秩序에 대한 制度史의 一考察 :특히 「和親」體制를 中心으로」, □□釜山女子大學論文集□□11, 釜山女子大學校

94) □□資治通鑑□□의 주석자 胡三省은 和蕃公主에 주를 달아 “唐公主入蕃者 謂之和蕃公主”라고 하였다.(□□資治通鑑□□卷247 唐紀 無終 會昌 3年 2月 庚寅條)

95)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주로 국내통일 직후 국력을 보다 부강 안정시키고자 제번의 무력침입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맺은 경우가 많았다.

다. 백제왕녀의 혼인을 이해할 때에 이점을 무엇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왕실혼의 경우, 혼인을 한 여성의 혼인 이후 지위가 출신국의 위상과 정비례해서 인정받는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중국 漢나라에서 공주를 받아들여 처로 삼은 烏孫의 昆莫은 동시에 匈奴출신 왕녀와도 혼인하였다. 이에 오손은 한의 공주를 右夫人으로 삼고 흉노를 左夫人으로 삼았는데, 유목민족이 보통 左를 귀하여 여기는 것으로 보아 오손은 이때 한부인보다 흉노부인을 높은 지위에 두었다. 또 당나라의 문성공주와 혼인한 吐蕃(629-846)<sup>96)</sup>의 松贊干布(620-649)는 네팔 왕녀와도 혼인하였는데, 네팔왕녀가 제1부인이었고 문성공주는 제2부인에 봉하였다. 당시의 당나라가 토번보다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은 분명하며 더욱이 네팔보다 국제적 위상과 지위가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인의 순서는 토번의 필요에 의해 정해졌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백제에서 인접국에 왕녀를 보낸 사례로, 백제 성왕 31년(553)에 신라 진흥왕에게 시집간 백제 王女가 小妃에 봉해진 사례<sup>97)</sup>가 있듯이 왕실혼인이란 것은 상당히 상대적이고 미묘하여 단순히 한 두가지를 보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즉 왜왕과 혼인한 백제 왕녀의 왕실내 위계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왕실간 혼인은 중원 왕조에 의해서만 주도된 것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북위를 건설한 拓拔鮮卑 宗室 여성의 혼인을 분석해보면, 주로 他國과의 和親, 歸附한 신하에 대한 安撫, 權臣과 功臣에 대한 寵絡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漢代이래 중원왕조의 화친정책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拓拔鮮卑가 부락의 생존과 확대를 위해 스스로 채택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sup>98)</sup>

백제 이외의 다른 여러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녀를 인접국에 보내서 和親을 맺는 시스템은 고대 동아시아에 일찍부터 존재하였고, 왕녀에 의해 주도된 화친이라는 외교전략의 효과는 입증되어왔다. 백제는 일찍이 責稽王이 帶方王女<sup>99)</sup>와 혼인함으로써 화친의 효과를 체득할 기회가 있었고, 이제 백제 나름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백제의 경우에도 渡倭한 왕녀들이 반드시 왕의 친자녀이지는 않았겠지만, 백제 왕실을 구성하는 비교적 높은 신분의 여성이었음은 분명하다. 또 采女가 백제에서 왜로 보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곧 백제의 국제적 위상이 왜보다 낮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중국왕녀들의 和親사례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결국 采女나 質子가 朝鮮에서 倭國으로만 보내지고 왜국에서 조선으로 보내는 사례가 없음을 말하면서, 채녀와 질자 등 人身이 반도에서 보내지는 것으로 한정될 때 이로써 당시의 국제적인 지

96) 吐蕃과 西藏, 티베트(Tibet)라는 용어는 의미가 약간씩 다르다. 우선 吐蕃은 唐代 中原人이 다시 青藏高原에 건립된 고대 藏族정권 및 그 속지와 속민을 부른 칭호로서, 혹은 土蕃이라고도 한다. 唐代 전적에서 칭한 吐蕃이란 명칭은 元明시대까지 기재되었다. 원래의 토번 정권이 붕괴되어 존재하지 않는데도 습관에 따라 토번이란 칭호가 계속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西藏은 비교적 늦게 통용된 용어로, 清代에 채용되었다. 행정구역 명칭을 雍正 건륭시대에 시작되었는데, 寧靜山 이서, 青海 이남의 康·衛·藏·阿里 등 4部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티베트(Tibet)는 土伯特의 音譯인데, 토백투는 토번의 音轉이다. 이것은 주로 서구 각 민족이 장족에 대한 칭호로 사용하며 동시에 그 분포지역을 가리키기도 한다.

97) □□三國史記□□ 신라본기 진흥왕14년조 冬十月 娶百濟王女爲小妃.

□□三國史記□□ 백제본기 성왕31년조 冬十月 王女歸于新羅.

98) 김영환, 1999, 「拓拔鮮卑 초기의 傳統文化 小論」, □□中國學研究□□17, 中國學研究會, 310쪽

99) □□三國史記□□ 백제본기 責稽王 즉위년條, 이 혼인으로 인해, 286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대방을 장인의 나라라는 이유로 구원하고 있다. 책계왕이 帶方王女 寶菓를 부인으로 맞이한 시기는 고이왕대로 보고 있다.(노중국, 2005, 「4~5세기 백제의 성장·발전과 삼국의 각축」, □□향토서울□□6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59쪽)

위가 저절로 밝혀진다는 坂元義種의 주장<sup>100)</sup>은 성립할 수 없다. 왕녀를 통한 국가간 혼인은 당시의 특수한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여성이 다른 나라로 보내졌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사료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 4. 백제와 왜의 왕실혼과 정국변화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바탕으로 백제 왕실에서 왜에 파견한 남녀왕족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처음보다 훨씬 풍부한 자료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백제왕실에서 파견된 王女와 王族

기간 인물	阿莘王 腆支王 (392-405)(405-420)	久爾辛王 毗有王 (420-427)(427-455)	蓋鹵王 文周王 (455-475)(475-477)	武寧王 聖王 威德王 (501-523)(523-554)(554-598)	武王 義慈王 (600-641)(641-660)
直支	397-405				
新齊都媛		428-?			
適稽女郎		429-?			
池津媛			?-458		
軍君			461--477?		
酒君			?-?		
意多郎			?-	501	
麻那君				504-505	
斯我君				505 <sup>101)</sup> -?	
惠					555-556
阿佐					597-?
豊章					643--661

그동안 采女로 기록된 백제 왕녀의 사례는 대외관계에서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간과되어 왔으나, 채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腆支(直支)와 昆支(軍君)의 사례 사이에 공백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왕녀들의 사례로 채워진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5세기 백제와 왜의 人的交流가 중단없이 지속되고 있었음이 파악된다.

여기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암시되어 있는데, 전지와 곤지는 왜 왕실과 혼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람들이며<sup>102)</sup> 이에 더해 백제왕녀들 역시 왜 왕실과의 혼인을 목적으로 도왜한 것이었다. 때문에 전지와 곤지의 왕실혼인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상호 人的交流의 초기단계인 5세기에는 백제와 왜국간 왕실혼의 사례가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왕실에게 혼인이란 통치 계급의 정치 목적을 실현하고 정치체도를 유지하는 수단이다.<sup>103)</sup> 혼인을 정치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보편 현상이지만 중국

100) 坂元義種은 신라와 백제에서 和親이나 質子가 왜국으로 보내지는 사례를 말하면서 이것으로서 왜의 국제적 지위를 알 수 있다(坂元義種, 1978, 「古代東アジアの國際關係-和親·冊封·使節よりみたる」,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東京)고 하였지만 중국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국제적 상하관계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01) □□日本書紀□□ 무열기 7년조(505)에서 무령왕이 502년에 즉위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躰年칭원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한 □□三國史記□□에 따르면 무령왕은 501년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무열기 7년(505)을 504년으로 보기도 한다.(연민수, 2002, 「古代 韓日 外交史」, □□韓國古代史研究□□27, 214쪽)

102) 김기섭, 2005, 「百濟 東城王의 즉위와 정국변화」, □□韓國上古史學報□□50, 한국상고사학회,

103) 앵겔스 저·김대웅 역, 1985, □□가족의 기원□□, 아침

춘추시대의 혼인은 그 정치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춘추좌씨전□□은 제후국간의 혼인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시기는 한 국가의 정치적 향배에 있어서 혼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夫妻의 관계는 개인보다는 출신 국가간의 정치 권력의 관계 내에서 해석되고 있었다. 혼인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된 춘추 시대에 배우자를 얻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동맹국을 얻는 것이었다. 즉 혼인관계를 맺은 두 나라는 동반적 관계가 되며 그 부인 또한 본국과의 관계에 개입하여 적극적인 외교를 하였다. 부인의 역할은 한 나라를 일으킬 수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sup>104)</sup> 이러한 혼인의 속성은 시대를 달리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고대의 왕실혼인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 이해관계에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백제왕녀의 혼인도 당시의 시대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4세기말에서 5세기초 아신왕대까지 전투를 반복하던 백제와 고구려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고구려가 427년 전격적으로 平壤遷都를 단행함으로써 백제의 불안함은 증폭되었다. 고구려의 南遷이 백제에게 주는 위협감은 엄청난 것이어서, 백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주변국과의 대외관계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신라와 동맹관계<sup>105)</sup>를 맺고자 노력하기도 하지만 신라영내에 고구려군이 주둔하는 형편에서 그 도움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429년에는 사신을 宋에 보내 조공하였는데 고구려의 남진에 대비하려는 백제측 움직임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송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중국의 상황은 북위에 의해 북조가 통일되면서, 남조의 송은 북위에게 위협이 되는 고구려와 대적하지 않으려 했다.<sup>106)</sup> 때문에 백제가 원하는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에는 송과의 관계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 시기 송과 고구려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고구려는 420년 송조의 창립 시 征東大將軍에 책봉되고<sup>107)</sup> 422년에 散騎常侍와 平州諸軍事가 더해졌으며,<sup>108)</sup> 특히 439년에는 송태조의 북위 토벌시 송은 토벌에 사용할 말을 고구려측에 요청했는데,<sup>109)</sup> 고구려는 요청한 말 800필 전량을 송조에 보낼 정도로 관계가 좋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제는 전통적 우호국인 왜국과의 군사동맹체제<sup>110)</sup>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 듯하다. 이것은 첫 번째 質子인 腆支의 파견이 396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58城 700村 공파와 직접 관련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첫 번째 왕녀 신제도원이 파견된 428년 춘 2월은 毗有王이 즉위한 직후이다. 전왕인 구이신왕이 사망한 것이 427년 冬 12월이기 때문에 428년 춘 2월이란 시점은 비유왕의 즉위 직후가 되며, 춘 2월에 新齊都媛을 왜로 보낸 것은 비유왕이 즉위하자마자 취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450년 고구려 邊將의 살해사건<sup>111)</sup>에서 나타나듯이 신라의 태도가 냉각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 고구려는 454년에는 신라를, 그리

104) 이숙인, 2005,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여이연, 234-236쪽

105) 고구려의 평양천도로 인해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06) 송은 백제와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백제를 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박윤선, 2007,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2-13쪽)

107) □□宋書□□ 권3 본기3 武王下

108) □□宋書□□ 권97 열전57 夷蠻高句麗

109) □□宋書□□ 권97 열전57 夷蠻高句麗

110) 연민수, 2002, 「古代 韓日 外交史」, □□韓國古代史研究□□27, 207쪽

111) □□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왕 34년(450)조

고 이듬해 455년에는 백제를 차례로 공격하였다.<sup>112)</sup> 455년은 개로왕이 즉위한 해이자 전왕인 비유왕이 사망한지 불과 1개월 뒤이다. 비록 신라가 구원병을 파견하여 백제를 돕긴 하였지만, 이 사건은 백제측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구려에 대한 방비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재차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백제는 왕녀를 왜에 보내게 된다.

472년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를 보면, 개로왕은 자신의 딸을 北魏 後宮에 들여보내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sup>113)</sup> 본래 국서란 것이 외교를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과장이 많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修辭를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여 보내는 글에서 국왕이 하는 제안을 의미없는 외교적 수사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개로왕의 제안은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북위는 혼인을 위해 고구려에 왕녀를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顯祖의 六宮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북위의 文明太后는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왕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장수왕은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sup>114)</sup>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백제는 국서를 통해 자신들은 실제로 북위에게 왕녀를 제공할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북위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양국간 혼인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백제가 혼인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은 유의할 만한 사실이다.<sup>115)</sup>

5세기의 백제에 있어서 최고의 군사적·외교적 과제는 거의 일관되게 북쪽에 있는 강력한 고구려에 대한 대항이었다. 5세기는 고구려의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최대 전성기를 구가한 시기였다. 고구려의 평양천도이후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압력 앞에서 백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변국과의 제휴였다. 신라와 나제동맹을 결성하는 한편 왜국과 보다 강력한 결호를 다질 필요가 있었다. 5세기에 백제의 왕녀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가는 일이 잦아지고 두 왕실간의 혼인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백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변세력인 왜를 血盟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왜와 교류를 맺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연결고리를 위한 백제측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원래 혼인은 양측의 이해가 맞아야만 성사되는 법이다. 한쪽의 정국변화만으로는 왕실혼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왕녀를 파견하는 측의 동향 못지않게 수용하는 측의 동향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당시 왜국사회 내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전과 달리 5세기부터 왜국은 단순한 물품 자체보다는 기술과 함께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원하게 되었다. 5세기 이후 사료에서 물품에 대한 언급 없이 渡倭人和 같은 사람만을 언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sup>116)</sup> 본래 생활문화와 기술의 깊이 있는 전수는 그것을 지닌 사람이 전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거리의 인접성으로 인해 고급문화를 가진 백제왕실과의 혼인은

112) 455년 기사는 백제와 신라의 공동 군사행동이 처음 나타나는 기사로, 노중국은 이 시기 백제와 신라가 공동동맹관계였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노중국,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북방사논총□□, 9쪽)

113) □□魏書□□列傳 百濟傳, 奉送鄙女 執掃後宮 並遣子弟 牧圍外廄

□□三國史記□□백제본기 개로왕 18년(472)조, 奉送鄙女 執掃後宮 並遣子弟 牧圍外廄

114) □□三國史記□□고구려본기 장수왕 54년(466) 3월조, □□魏書□□列傳 高句麗傳 北魏 孝文帝 承命 元年(476), □□魏書□□권60 程駿傳. 다만 六宮문제의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466년, 466~472년, 2회에 걸쳐 나타난 것으로 보는 등 논자마다 이해가 다르다. 박한제, 1988, 「北魏의 對外政策과 胡漢體制」,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일조각, 213쪽. 이성제, 2002, 「5~6세기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서강대박사학위논문, 87쪽. 김진한, 2006, 「5世紀末 高句麗의 對北魏外交와 漢城 攻略」, □□북방사논총□□12, 고구려연구재단, 302쪽

115) 후대 동성왕과 성왕대에 있었던 신라와의 혼인동맹이 백제에 의해 주도되는 것 역시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116) 김기섭, 2005, 「5세기무렵 백제 渡倭人の 활동과 문화 전파」, □□왜 5왕문제와 한일관계□□, 240쪽

왜측에게도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가야주도로 움직이던 이전의 왜국내 외교노선이 점차 다변화되면서 5세기이후 백제산문물이 새롭게 등장하는 점은 왜국 내에서 기술·지식체계가 5세기 전반을 경계로 백제계로 변화하는 것과 짝하여, 왜국의 상황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지표이며, 그만큼 이들의 왜국내 활동이 주효하였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마치 漢과 匈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던 烏孫이 漢의 解憂<sup>117)</sup>와 혼인한 이후 親漢경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해우의 정치적 수완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왜국내에서 분 새로운 백제의 기운은 왕녀들에 힘입은 바가 있었다. 또 흉노왕인 呼韓邪單于와 혼인한 王昭君에 대해 흉노에서 ‘영호연지(寧胡關氏)’ 즉 흉노를 편안하게 하는 부인이라는 뜻으로 부르고 그녀의 아들을 左賢王의 지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왕실간 혼인은 양국간에 우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 왕녀를 매개로 한 국가간 혼인과 인적교류는 백제와 왜 양국이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활용된 외교적 책략이었다고 평가된다.

환기하자면, 여성이 다른 나라로 보내졌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초기의 연구자들이 質子の 존재를 왜에 대한 백제의 복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근래 質을 국가간 上下·服屬 관계의 표상으로 보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采女라는 선입견을 견어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채녀로 기록된 백제 왕녀들은 국가간 우호관계의 증진을 위해 파견되고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 외교관계로 넘어가기까지는 국가와 국가, 왕실과 왕실, 문화와 문화간에 우선 친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 양국간 친연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백제 왕녀들이었다. 더구나 사람의 이동을 통한 문화교류를 원하는 왜국의 현실에서 고급문화를 가진 백제 왕녀와 왕녀의 수행원들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은 물론이다.

왕실간의 혼인은 곧 피로 맺어지는 것이며, 血盟적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왕실혼은 이후 왜국이 백제에 대해 보여주는 한결같은 친밀감과 憧憬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채녀로 기록된 백제 왕녀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자료를 모아서 검토해본 결과, 이들은 백제와 왜의 대외교류를 대동시키는 시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존재들로 평가할 수 있었으며, 여성이 대외관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대외관계가 왕실의 혈연관계에 의해 규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왕실의 혈연관계에 의한 영향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백제와 왜 왕실간에 이루어진 혼인으로 인해서 양국은 친연관계를 조성하고, 특별한 우호관계를 형성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왜국 내부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왕녀라고 하는 여성이 갖는 어떤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교류가 지속되지 못했던 것 같다. 6세기이후 왜국 내에서 새로운 문화의 수용요구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새로운 문물과 기술의 주기적 교체를 원하게 된다. 교대와 교체가 지속적으로

117) 解憂는 초왕 劉戊의 손녀로 漢의 국가정책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는 여성이다. 심지어 解憂는 다른 화번공주들이 경멸해 마지않던 이민족의 형사취수풍속(媾婚制)에 따라 3번의 혼인을 하였으며, 국가적 이해에 따라 3번째 남편 狂王 泥靡의 암살계획에도 깊숙이 가담하여 결국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한다. 澤田勳, 1996, □□匈奴-古代遊牧國家の興亡□□(사와다 이사오, 2004, □□흉노□□, 아이필드, 88쪽)



가능한 남성왕족과 관인, 기술자의 필요성이 커졌던 것이다.<sup>118)</sup> 예를 들어 醫博士 易博士 曆博士 僧侶 등의 인적 자원을 파견한다던가<sup>119)</sup>, 余宜受를 수석으로 하는 調信仁 外 100여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는 것 등은 官人外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시기 양국간 외교형태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120)</sup> 이런 상황 속에서 백제왕녀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면서 이런 교류의 형태도 자연 소멸되어 갔을 것으로 본다. 이제 6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는 여성을 매개로 하는 낮은 단계의 교류를 넘어서, 보다 높은 단계의 교류 즉 적극적인 형태의 교류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한편 백제에서는 6세기에 이르러 昆支의 아들들인 東城王과 武寧王이 차례로 집권하게 되었다. 이들은 왜의 王女를 부인으로 얻었을 가능성이 큰 것<sup>121)</sup>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들이 백제의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간에 이루어진 백제와 왜의 우호관계는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자료들은 백제가 대외관계에 있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어떤 방법을 구사했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

## 5. 맺음말

본 논문은 고대 동아시아의 국가간 婚姻과 人的交流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우선 백제와 왜 왕실의 관계를 재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日本書紀□□ 속에 采女로 기록된 백제 왕녀들의 기사에 주목하여 고대 동아시아의 왕녀들이 다른 왕실과 혼인을 맺은 사례를 검토하고, 여성왕족의 외교적 역할을 평가해보았다.

왜에 파견된 百濟 王女들은 □□日本書紀□□에 采女의 신분으로 倭王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통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역사경험 속에 내재된 선입견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중세이래 貢女와 위안부문제 등으로 여성이 외국으로 보내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사실이 백제와 왜의 上下關係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中國 특히 漢~唐代의 사례를 보면 王女가 다른 나라로 보내어져 婚姻하는 것에는 국가간 우열에 따른 한 가지 패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문화자원의 요소별로 매우 다양한 패턴과 편차를 보이며, 이러한 왕실간 혼인은 양국간 외교와 문화교류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백제 왕녀의 혼인은 국가의 上下關係나 服屬關係를 보여주는 증표가 아니다. 백제 왕녀들은 국가간 우호관계의 증진을 위해 왜국에 파견되어 왜왕과 혼인하였고 백제의 고급문화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일간의 문화교류에 있어서 견인차적인 역할을 한 존재로서 百濟 王女에 주목하여, 외교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양상을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그동안 일본학계와 한국학계에서는 백제의 왕족과전 관행을 質체제(시스템) 또는 王族外交로 이해하였는데, 왕녀들의 파견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나면 왜 파견자 모두를 質이라는

118) 남성들은 일정기간 체제후 본국으로 돌아간 데 반해서 여성의 경우는 다시 귀국을 한다던가, 다른 인물로 교체할 한다던가 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혼인과 자녀출산으로 왜국 내에 터를 잡고 나면 본인도 귀국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백제 역시 왕녀들의 귀국을 원치 않았을 것이기에 이들은 왜국에서 생을 마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19) □□日本書紀□□ 欽明紀 14년, 15년

120) □□日本書紀□□ 齊明紀 원년

121) 김현구, 2002, 「백제와 일본간의 왕실외교-5세기를 중심으로-」, □□百濟文化□□31,

단일한 맥락에서 일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質이라는 용어는 남성위주의 표현인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문제 뿐 아니라, 과견과 수용이라는 양측의 입장이 대등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제왕족에 대한 人質觀이 백제멸망후에 이루어진 '百濟王' 姓 사여와 관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質이란 용어사용에 더 주저되는 면이 있다. 한편 王女가 넓은 의미에서 王族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왕족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몰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앞으로는 여성의 사례까지 포함해서 보다 폭넓은 의미의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사료상에 드러난 백제왕녀의 과견사례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여 단편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것일 뿐 아직 뚜렷한 실증적 근거를 내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 있게 될 구체적인 논의의 단서를 마련하고, 점진적인 자료의 확장을 통해 구체적인 한일 문화교류사 복원 논의를 예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